

IAEA

.....

## 原子力安全協約의 추진 방향



금년 10월 제5차 전문가회의를 거쳐  
94년 상반기에 체결될 이 협약의 추진과정과  
향후 전개방향을 요약하고  
협약(안)의 전문을 게재하여  
국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

이 유 한  
과학기술처 원자력실 사무관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전세계 원자력시설의 안전성 증진 및 원자력 안전분야에서의 국제협력 확대 등을 목표로 「원자력 안전협약(Nuclear Safety Convention)」의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TMI 원전사고(79. 3) 이후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활동이 강화되었으며, 지난 86년 4월 체르노빌 원전사고의 발생 이후 옛 소련 및 동유럽 국가의 원전을 중심으로 원자력 안전문제가 국제적 관심사로 부각됨에 따라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안전성 추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를 중심으로 옛 소련에서 설계한 가압경수로인 VVER과 흑연 감속로인 RBMK 원전에 대한 정량적 안전성평가가 수행된 바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국제원자력기구 제 35차 총회(91. 9)에서는 원자력안전 및 방사선 방호관련 국제협력의 강화를 위한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 IAEA 원자력안전성 증진위해 「원자력안전협약」체결 추진

이 결의안에 의거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은 총회의 위임을 받아 원자력안전협약(안)의 가능한 형태 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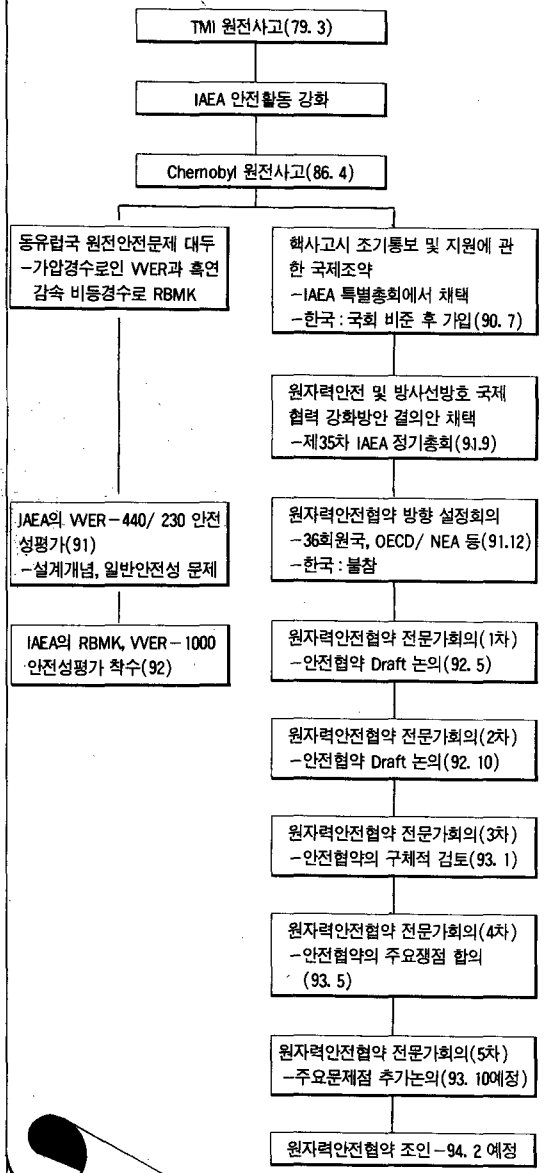
내용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실무회의를 개최(91. 12)하고,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제적인 체제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이후 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92. 2)에서는 국제원자력기구 주도로 원자력안전협약을 제정하기로 합의하고 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임시 실무작업반을 사무총장 직속으로 설치하기로 하였다.

협약의 초안 작성을 위한 제1차 전문가회의(92. 5) 및 제2, 3차 전문가회의 등의 연속적 검토과정을 거쳐 93년 5월 개최된 제4차 전문가회의에서 협약의 적용범위 등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원칙적 타협안을 도출하고 국제적인 공감대 형성을 통한 협약의 조기 타결을 목표로 실무작업을 가속화하고 있다. <그림 1>은 지금까지의 추진경위를 간략히 도식화한 것이다.

원자력안전협약(안)의 작성에는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50여개 국가 및 기구에서 100여명의 전문가가 참석하여 주요 쟁점에 관한 각국의 의견을 활발히 개진하고 있으며, 올 10월 제5차 전문가회의를 거쳐 94년 상반기에는 협약의 체결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제4차 전문가회의까지의 주요 쟁점과 향후

〈그림 1〉 원자력안전협약(안) 추진경위



전개방향에 대한 기본사항을 요약했으며, 원자력안전협약(안)을 첨부하였다.

### 제4차 전문가회의까지의 주요 논의사항

원자력안전협약 제정을 위한 제4차 전문가회의가 93년 5월17일부터 5월21일까지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국제원자력기구 본부에서 열렸다. 이 회의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 일본, 캐나다, 프랑스 등이 참석하여 그동안의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각국의 의견 청취 및 토론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제4차 전문가회의까지 논의되었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협약의 적용범위

독일, 스웨덴, 이탈리아와 같은 유럽국가들은 안전 문제는 본질적으로 동일하며, 방사성폐기물의 차세대 영향, 그리고 일반인은 원전과 방사성폐기물을 구분하지 않는 현실 등을 근거로 협약의 적용범위를 원전시설 뿐만 아니라 방사성폐기물시설 등과 같은 핵주기시설까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반해 아이레, 인도, 멕시코는 협약의 적용범위를 민간용 원자력시설 뿐만 아니라 군사시설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강한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 일본, 캐나다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현재 상용원전이 안전상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방사성폐기물 등 다른 원자력시설에 관해서는 국제적인 기준이 미비하여 장기적인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므로 신속한 합의와 조기협약 이행을 통한 원자력안전성 제고를 위해서는 협약의 범위를 일단 민간용 원전시설에 국한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각국의 전문가들은 일단 협약의 범위는 상용원전에 국한하되 다른 의견들을 고려하여 기타 시설에 관하여는 향후 계속 논의한다는 강한 약속을 서문 등에 포함시킨다는 데에 합의하였다.

기타 시설의 범위에 관하여는 ①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만 언급하자는 미국의 의견과 ②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과 연구용 원자로를 언급하자는 네덜란드의 의견, 그리고 ③ 모든 민간용 핵연료주기 관련시설로 하

지는 독일, 프랑스안이 제기되어 각국의 의견이 분산됨에 따라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못하였다.

약속을 표현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서문에 적절한 문구를 삽입하는 방안과 93년 9월 IAEA 총회에서 결의안으로 채택하자는 방안이 제시되었으며, 두가지 안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국가가 동의하였다. 약속을 표현하는 문구로서는 「관련 안전기본문서(Safety Fundamentals Document)의 개발이 끝나는 대로 즉시 협상을 시작한다」는 표현 등이 제시되었다.

#### 기술부록 채택 문제

제3차 전문가회의(93. 1)에서 IAEA를 위시하여 프랑스, 이탈리아, 이집트 등은 발생된 사안에 대한 실제적인 검토·평가를 위해서는 기술부록(Technical Annex)의 채택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 캐나다, 日本, 스웨덴 등은 각국의 법령을 구속할 수 있는 의무로서의 기술부록은 각국의 규제체제, 기술수준 및 행정·문화적인 여건 등의 차이로 인하여 공통적인 기준을 설정하기가 어렵고 단일 기준으로 많은 국가의 다양한 원자력 설비를 규제하는 것은 원자력 안전의 국가적 책임 원리에 위배되므로 협약은 현재 전 세계에서 공통으로 받아들여지는 안전관행에 근거하여 포괄적인 규정으로 작성하는 것이 타당함을 주장하였다.

양측의 논쟁속에 네델란드가 기술부록은 상세검토(Peer Review) 과정에서 기본지침으로 활용하면 된다는 중재안을 제시하고 많은 국가들이 이에 동조함으로써 기술부록은 채택하지 않지만 협약의 서문 등에 NUSS 코드를 참조문서로 제시함으로써 상세검토를 위한 지침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각국의 동의를 유도하였다.

#### 체약국회의

체약국회의의 위상 및 기능과 관련하여 상설기구화하여 협약 이행사항에 관한 계속적인 검토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자는 독일, 네델란드, 오스트리아 등의 의견과 원자력안전에 관한 새로운 규제체제를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미국, 日本 등의 의견이 대두되었다.

원자력안전협약은 IAEA의 지원하에 운영되어야 할 것임에 따라 체약국회의는 IAEA의 기능과 완전히 분

리될 수는 없지만 IAEA는 협약의 운용과 체약국회의의 개최, 진행 등 행정적 지원 기능을 담당하는 사무국 역할을 수행해야지 체약국 회의 및 협약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만큼 강력한 역할을 수행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체약국회의의 참가 자격과 관련하여 기술전문화된 국제기구인 각국의 동의가 있으면(Consensus) 참관자(Obsever) 자격으로 허용하며, 비정부기구의 참여에 대해서는 일본은 반핵단체의 참가 가능성 등의 예를 들어 불가를 표명했지만 전문가들은 각국 대표단의 일원으로써의 참여는 허용하고 개별적으로는 초청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체약국회의에서는 6개의 공식적 유엔언어(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서반아어)를 사용하며, 체약국회의에서 논의된 안전문제들과 그 일반적 결론을 요약한 최종 보고서는 대중에 공개할 수 있음을 동의하고, 체약국회의에서 IAEA 등 외부기관에 관련 보고서 등을 제출하도록 직접 요청하는 권한은 없음을 확인하였다.

#### 제출된 보고서의 검토

협약의 의무조항에 따라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보고서는 협약의 각 의무사항의 준수에 대한 내용과 그 수행방법에 대해 기술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일반적보고서(General Text)로서 작성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으나 구체적인 내용이나 양식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없었으며, 제출된 보고서의 검토절차는 각 체약국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최대한 유동성을 가지도록 하자는 데 합의하였다.

협약의 발효이후, 체약국회의에서의 검토과정에 대한 기본방침(Ground Rule)을 설정하기 위하여 첫 체약국회의에 앞서 준비위원회(Preparatory Committee)를 개최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또 보고서는 체약국회의의 개최 6개월전에 제출하여 사전에 미리 배포하며, 기술전문소위원회(Sub-Group)를 구성하여 각 체약국 보고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체약국회의의 본회의(Plenary Session)에 상정하여 논의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 국제협력

브라질, 멕시코, 중국, 쿠바, 칠레 등 개도국을 중심으로 원자력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동 협약에 별도의 조항으로 국제협력조항을 삽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그러나 미국, 프랑스, 일본, 독일,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본 협약이 국제협력을 위한 별도의 창구가 아니므로 국제협력조항의 삽입은 필요없고, 그 중요성이 동 협약의 정신적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이에 따라 서문에 협력에 대한 강한 의지(Commitment)를 포함하고, 상세 검토 과정을 통해서 국제협력을 강화하자고 결론을 지었다.

#### 기존 현실의 인식 및 공공 정보제공

협약의 적용과 관련된 문제로써 협약발효 시점에서 각 계약국은 협약의 요구수준을 즉시 이행해야 하는지 혹은 점진적으로 이행해야 하는지 등 협약의 이행범위와 이행시기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문제가 기존 현실의 인식이다.

각국의 전문가들은 기존 현실은 고려하되 현재의 규제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초기 기준에 따라 지어진 원전설비는 적절히 재 검토되고 필요한 조치가 취해져야 하며, 각국은 적절한 시기에 협약의 안전수준을 충분히 이행할 수 없는 원전에 대해 가동중지를 위한 과정을 그 규제체제 내에 포함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많은 전문가들은 일반 대중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의무조항으로 포함하는 것에 동의하였으며, 제공되는 범위는 정상운전시의 일반 정보는 물론 사고시의 구체적인 정보도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 경비문제

계약국회의의 개최 소요비용과 관련하여 IAEA 정규예산에서 지원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추가적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국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구분되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계약국이 각자 부담하는 IAEA 비정규예산으로 하자는 의견과 日本, 폴란드, 불가리아, 아이레 등을 중심으로 IAEA 정규예산에서 지출되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양분되어 열띤 논쟁을 벌였으나, 두 의견이 팽팽히

맞서 합의하지 못하고 두가지 안을 모두 고려하여 검토하기로 하였다.

#### 기 타

서문에 포함될 내용과 관련하여 미국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핵무기비확산에 대한 문구를 삽입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브라질 등은 국제협력조항이 본 협약에 포함되는 것이 중복으로 인식되는 것처럼 핵무기비확산에 관한 문구의 포함도 중복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재정문제를 포함한 계약국회의의 의사결정은 각국의 동의(Consensus)에 의해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었으며, 단지 절차상 혹은 조직상의 어떤 문제는 임시적으로 다수결이 불가피하다는 데 동의하였다. 이 문제는 향후 다른 국제협약의 관련 조항을 검토해서 구체화하는 것으로 유보하였다.

또한 분쟁의 발생시는 계약국 외부의 힘을 빌리길 보다는 계약국회의의 내에서의 협의와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해야함을 강조하고, 이를 가벼운 선언적인 내용으로 동 협약에 표현하는 데 동의하였다.

### 향후 추진방향

본 협약은 전 세계의 원자력 안전증진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각국의 안전노력을 고무하기 위하여 추진되고 있다.

이번 제4차 전문가회의에서는 협약의 적용범위 및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원칙적인 타협을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IAEA는 원래 93년 9월 정기총회에 확정된 원자력안전협약(안)을 상정하기로 하였으나, 참가 각국의 포괄적 의견수렴을 위하여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금번 회의 결과 및 각국의 의견을 참고로 필요시 법률적, 기술적 자문을 받아 수정안을 재 작성할 계획이다. 작성된 수정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각국의 전문가에게 배포하여 검토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93년 10월 경에 전문가회의를 한번 더 개최한 후 94년 2월 경에 안전협약 조인식을 가질 예정이다.

여기에 서술된 내용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및 한국원자력연구소, 그리고 관련전문가들과 함께 검토한

그동안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재 구성한 것이다. 본 협약은 원자력안전에 관련된 국제적인 제재 성격을 갖기 보다는 체약국들의 자율적 참여와 상호관계에 근거한 수혜적 성격(Incentive Character)을 강조하고 있으

나, 협약의 이행 과정에서 국내 원자력산업에의 영향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더욱 필요할 것이다.

## 原子力安全協約(안)

### 서 문

1. 체약 당사국은 자국의 원자력시설이 안전하며, 이를 위한 국내 규제체도가 확립되어 있고, 환경에 무해함을 국제사회에 담보하는 것이 매우 중대함을 인식하고
2. 자국 내에 설치되어 있는 원자력시설의 안전에 전반적인 책임이 있음을 공감하며
3. 원자력의 안전수준을 전 세계적으로 증진시킬 필요성이 있고, 원자력안전분야에서의 국제적 협력의 강화가 요청된다는 것을 재 확인함.

### 제1장 총 칙

제1조(용어 정의) ① 원자력시설(Nuclear Installation)

② 운영자(Operator) : 자격있는 공공 당국에 의해 당해 원자력시설의 운영자로 지정되거나 인식된 자(Person)

③ 자(Person) : 법에 의해 인정된 어떤 개인, 조합 또는 단체

④ 규제기관(Regulatory Body) : 회원국(정부)에 의해 지정된 기관으로써 인허가 업무를 관리하고 원자력관련시설의 입지, 설계, 건설, 시운전, 운전 및 해체를 규제하는 법적 권한을 가진 기관

⑤ 허가(License) : 원자력발전소의 입지, 설계, 건설, 시운전, 운전, 해체와 관련된 특정 행위의 수행을 위하여 규제기관에 의해 신청자에게 발급되는 인증

⑥ 가상운전사태(Anticipated Operational Occur-

rence) : 발전소 수명 기간중 1회 또는 수회의 발생이 예상되거나 설계에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될 경우 안전상 주요 설비에 중대한 손상이나 사고상황으로의 진행이 일어나지 않는 정상운전에서 벗어난 운전상태

⑦ 운전제한조건(Operational Limits) : 원자력발전의 안전운전을 위해 운전변수의 한계치, 설비의 능력 및 성능수준 그리고 운전요원 등에 대해 규제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일련의 규칙

제2조(조약의 적용범위) 이 조약은 상용원자로의 안전문제에 적용함.

### 제2장 의 무

#### 제1절 총 칙

제3조(목적) 체약국은 개별적으로 또는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 ① 전세계적으로 고도의 원자력안전성 달성 및 유지
- ② 전리방사선 유해한 영향으로부터 개인, 공공 및 환경의 보호
- ③ 방사선 누출사고의 발생 방지 및 그 결과의 최소화

제4조(협력) 체약국은 본 조약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함.

제5조(법적조치) 체약국은 모든 입법적, 규제적, 행정적 수단을 강구하고, 본 조약이 실효성을 가지는데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해야 함.

제6조(자원) 체약국은 원자력시설의 안전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인적, 물적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제7조(보고) 계약국은 본 조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에 관하여 본 협약 제21조에 따라 보고하여야 함.

제8조(운영자의 책임) 계약국의 제반 의무는 국가 관할권 하에서 운영자의 원자력시설 안전을 위한 1차적 책임을 침해하지 아니함.

## 제2절 원자력안전 : 법과 규제제도

제9조(법과 규제제도) ① 계약국은 원자력 안전을 위한 법과 규제제도를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함.

② 법과 규제제도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규정되어야 함.

1. 안전목표와 규제법령의 확립
2. 원자력시설에 관한 인허가제도
3. 원자력시설이 적합한 규제법령과 기간에 따라 수행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한 안전심사 및 안전검사제도
4. 적합한 안전규정의 집행과 허가기간

제10조(규제기관) ① 계약국은 제9조 제2항에 열거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규제기관을 지정하거나 설립하고, 그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권한, 자원 및 인력 등을 갖추게 하여야 함.

② 계약국은 규제기관과 다른 원자력이 이용 증진기관 사이의 효율적 분리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제3절 안전관리

제11조(방사선방호) 계약국은 원자력시설에서 야기되는 방사선피폭량 및 방사성물질의 계획된 방출이 합리적으로 낮게 ALARA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에 대한 누적 방사선량이 국내기준(국제적 권고)을 상회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제12조(안전우선) 계약국은 원자력시설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자국의 국내 법령과 안전규제제도를 정비하여야 함.

제13조(품질보증) ① 계약국은 다음과 같은 품질보증계획을 수행하여야 함.

○제1안: 원자력안전을 위한 품질보증기준을 정하고, 동 기준은 원자력시설의 전 주기 동안 충족될 수 있어야 함.

○제2안: 원자력시설의 안전과 관련된 재료, 부품, 기기, 계통, 구조,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각종 서비스 등은 정해진 원자력안전기준을 충족시켜야 함.

② 이러한 품질보증계획에는 문서관리, 설계, 조달, 절차, 검사 및 시험, 부적합사항과 시정조치, 기록과 감사에 관한 체계를 포함하여야 함. 또한 품질보증계획은 사업자가 그 자신의 책임하에 또는 감독기관의 감독을 받아 수행하여야 함.

제14조(인적자원) 계약국은 원자력시설의 모든 안전관련 활동을 보증하기 위하여 적절한 교육훈련을 받은 요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이들을 정기적으로 재교육하며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모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제15조(안전성평가) 계약국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① 시설의 특징을 고려하여 원자력시설을 시운전하기 전 또는 동 시설의 전 주기 동안 포괄적, 체계적, 정기적인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이러한 평가는 문서화되어 사업자 이외의 독립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검토를 받아야 하며, 과거의 운전경험과 최신 안전정보가 지속적으로 반영되어야 함.

② 해석, 감독, 시험 및 검사에 의한 입증은 시설의 물리적 상태와 운영이 운전제한조건과 안전요구사항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함.

③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대하여도 장기적 안전성 평가를 시행하여야 함.

제16조(긴급사태에 대한 대비) 계약국은 그 관할하의 원자력시설부지에 대하여 시설의 특징을 고려한 비상계획을 수립하고, 모든 상황의 비상사태 발생시에 대처할 수 있는 훈련을 수행하여야 함.

## 제4절 시설안전

제17조(부지선정) 계약국은 인허가 절차의 일부로서 부지선정을 위한 적절한 절차를 강구해야 함.

① 예상수명기간 중 시설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부지관련 요소 또는 동 시설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요소(비상계획 수행)의 타당성이 포함되어야 함.

② 주변환경과 주변국가에 대한 시설의 영향 그리고 부지의 계속적 안전성 입증을 위하여 관련된 모든 요소의 재 평가가 필요함.

**제18조(설계)** 계약국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보증하기 위하여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① 원자력시설의 설계는 사고발생 방지 및 방사성 영향 완화관점에서 방사성물질의 방출에 대비한 다중 방호체제를 갖도록 함.

② 원자력시설의 설계에 응용되는 기술은 경험에 의하여 입증되거나 시험 또는 해석 등을 통하여 증명된 것이어야 함.

③ 설계는 시설의 전 운전기간 및 해체단계에서 인적 요소와 인간-기계 접촉면에 관한 특수 사정을 고려하여 신뢰할 수 있고, 안정되어야 하며 운전원이 용이하게 운전할 수 있어야 함.

**제19조(안전운전)** 계약국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① 원자력시설에 대한 최초의 운영허가는 건설된 원자력시설이 적절한 안전해석, 설계 및 안전요건에 부합한다는 것을 밝히는 시운전계획에 바탕을 둘 것.

② 안전해석, 시험 및 지속적인 운전경험으로부터 야기된 운전 제한조건은 운전을 위한 안전경계의 확인에 필요한 것으로써 정의되고 개선할 것.

③ 원자력시설의 운전, 보수, 검사와 시험은 입증된 절차에 따라 수행할 것.

④ 절차규정은 예상되는 가상운전사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함.

⑤ 관련분야의 안전에 있어서 필요한 공학적·기술적 지원은 원자력시설의 전 주기 동안 유효하여야 함.

⑥ 안전에 심각한 사고는 운전자가 규제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⑦ 운전경험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하며 또한 그 결과에 따라 행동하고 (이는 국내 외 간, 운전자 상호 간, 규제기관 상호 간) 공유해야 함.

⑧ 원자력시설의 운전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

기물은 방사능과 부피 모두 관계규정에 따라 최소화되어야 함.(보조적 폐기처리 및 중간저장은 최종 처분에 대한 안전기준에 따라 관리되어야 함. 사용후연료 및 방사성폐기물은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현재와 장래에 있어서 인간과 환경이 감당할 수 없는 손해를 유발하지 아니하도록 처리·저장·폐기되어야 함.)

⑨ 원자력시설의 해체는(규제기관에서 승인한) 적절한 안전해석과 해체계획에 따라야 함.

### 제3장 협약의 운영

**제20조(체약국회의)** ① 본 협약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조약발효 후에 체약국회의를 설치하기로 함.

② 체약국은 본 회의에 1인의 대표자를 파견함. 다만 대표자는 필요에 따라 예비대표, 보좌역, 기술고문, 전문가 및 기타 관계인을 동반할 수 있음.

③ 체약국회의에는 비 당사국이나 국제기구(정부 및 비 정부) 등을 참관자의 자격으로 참석을 허용할 수 있음.

④ 제1회 체약국회의는 본 조약발효 후 1년 이내에 개최하도록 함.

⑤ 체약국회의의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마다 개최함.

⑥ 특별회의는 체약국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체약국 전체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회의개최 6개월 전에 서면으로 사무국에 요청하는 경우 개최함.

⑦ 체약국회의는 운영절차 및 회계규정을 별도로 정함.

**제21조(체약국회의의 기능)** 체약국회의는 협약 이행을 위한 다음 사항을 검토한다.

① 제7조에 따라 체약국이 제출하는 보고서의 필요한 내용, 형식, 제출회수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일(규칙과 기준에 따라 보고서를 검토)

② 체약국의 조약상 의무이행에 관한 검토평가 및 제22조에 따른 보고서 발행

③ 조약의 이행과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보조기관 및 체제의 설립

④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본 조약의 개정안에 대한 검토

⑤ 기타 사항의 검토

[제21조의 2 경비:내용 미정]

제22조(체약국회의의 보고서) 체약국회의는 본 조약의 이행을 위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모든 체약국 및 적합한 공중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제23조(정보제공에 대한 제한) ① 본 조약의 규정은 체약국의 국내 법령에 근거하여 지적재산권 또는 국가 안보를 포함한 개별정보(Personal Data), 산업 및 상업 기밀을 보호하기 위한 체약국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② 체약국의 어느 일방이 제1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정보를 제공하였을 경우 그와 같은 정보를 제공받은 체약국은 그 정보의 기밀성과 공급조건을 준수하여야 하고 공급된 목적에 따라서만 사용하여야 함. 또한 어느 체약국이 국제기구에 대하여 비공개로 정보를 제공하였을 경우 그 정보는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제24조(사무국)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체약국회의의 사무국이 되며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함.

① 체약국회의의 개최, 준비 및 지원

② 본 조약의 규정에 따라 접수한 각종 보고서 및 정보를 모든 체약국에 전달

③ 체약국회의에 결정된 지원 서비스와 전문가적 지식의 제공 등 기타 지원업무

## 제4장 타조약과의 관계

제25조(타 국제조약과의 관계) 기존의 국제협약 아래서의 상호 권한과 의무는 본 협약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26조(양국간, 지역간 및 다자간 조약) 제1안: 상호간의 이해증진을 위하여 양자간, 지역간, 다자간 협약의 결론이 본 협약과 모순되지 않도록 고려한다. 각 체약국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타 협약의 사본을 사무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안: 본 협약의 규정은 기존의 양자간 및 다자간

협약에 따른 체약국의 더 엄격한 규정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된다.

## 제5장 분쟁의 해결

제27조(분쟁의 해결) ① 2국 이상의 체약국 사이에 조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관련 당사국은 그들이 동의하는 협상방법이나 다른 평화적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여야 함.

② 상기의 분쟁해결을 위한 협의가 체약국의 요청후 1년 이내에 종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분쟁 당사국은 중재를 요청하거나, 국제사법재판소에 결정을 의뢰할 수 있음.(중재 요청 후 6개월 이내에 중재의 대상이 된 기관에 대하여 당사국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국은 국제사법재판소 소장 또는 유엔 사무총장에 대하여 별도의 중재기관의 선정을 요청할 수 있음. 선정대상 기관이 경합하는 경우 유엔 사무총장이 우선권을 가짐.)

③ 본 협약에 서명, 비준, 동의시 정부는 상기 제2항의 분쟁 해결절차에 대하여 위반치 않는다는 것을 선언해야 함.

## 제6장 잡 칙

제28조(서명) 협약의 서명을 위하여 비엔나의 국제원자력기구 본부나 뉴욕의 유엔 본부는 협약이 발효되기 전까지 모든 국가에 개방된다.

제29조(비준, 동의) 협약은 국가와 지역간 경제공동기구들에 의하여 비준, 동의되어야 한다.

제30조(협약의 발효) 협약은 최소한 1기의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하고 있는 6개국을 포함하여 20개국 정부의 서명 후 90일 이후에 발효된다.

제31조(협약의 개정) 어떤 체약국도 협약의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제32조(협약의 탈퇴) 협약의 탈퇴는 통지서가 접수된 후 1년 이후에 효력을 가진다.

제33조(협약 원본의 보관) 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서반아어로 작성된 협약의 원본은 동일하게 인정된다.